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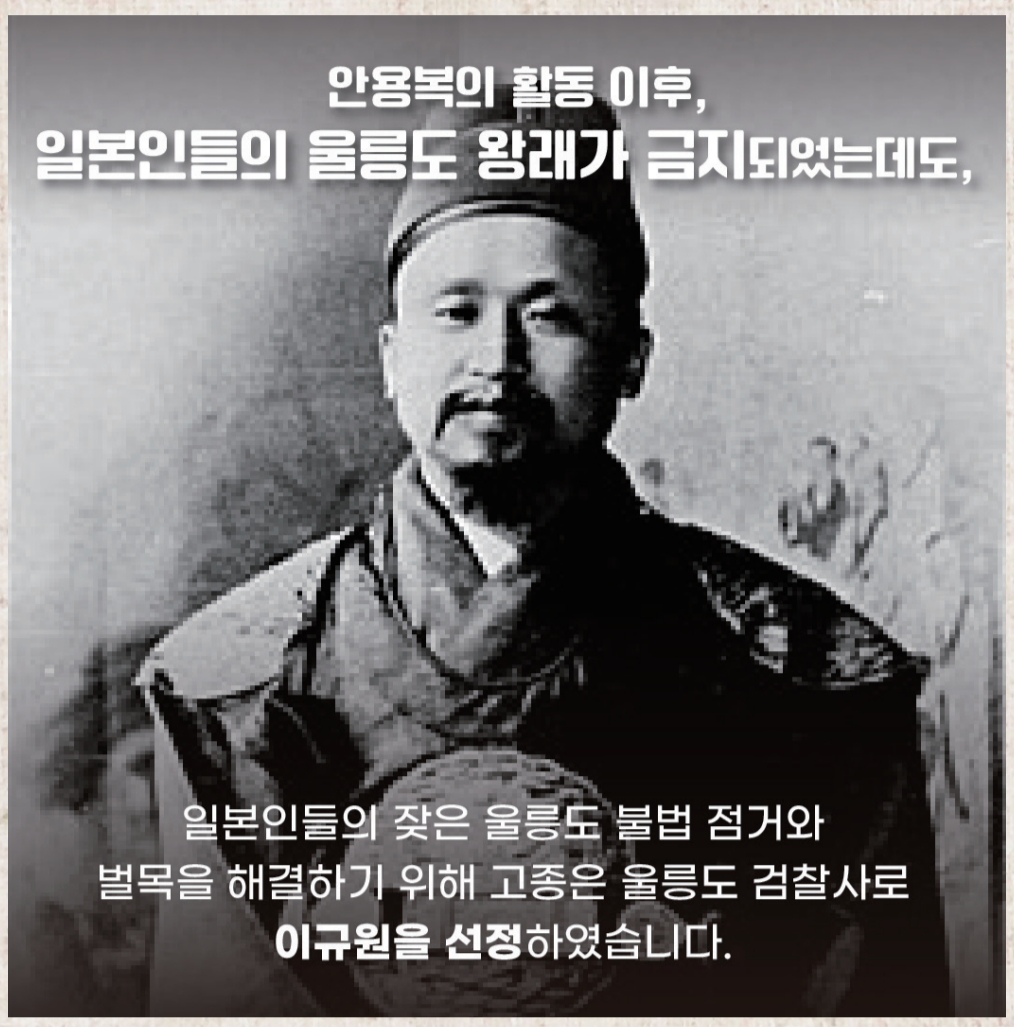
일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이끌어낸 - 울릉도 감찰사 이규원 -

기고 김영수(현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총서편찬위원장) 정리 박선경

울릉도감찰사 임명과 전체적인 수토 여정

1881년 5월 23일 이규원(李奎遠, 1833~1901)은 울릉도감찰사(鬱陵島檢察使)로 임명되었는데 이듬해인 1882년 4월 7일 이규원은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에서 고종을 알현하고 4월 10일 서울을 출발한 다음 4월 12일 원주목(原州牧), 4월 20일 평해군(平海郡)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이규원은 1882년 4월 29일 오전 구산포(邱山浦)에서 울릉도로 출항했다.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 저녁(酉時, 오후 6시경) 울릉도 서쪽 소황토구미(小黃土邱尾, 현재 학포)에 도착했다. 5월 12일 아침 울릉도를 출발한 다음 이규원 감찰사 일행은 5월 13일 저녁(亥時, 10시경) 평해 구산포(邱山浦)로 정박하고 육지에 내렸다. 그 후 이규원은 5월 27일 서울에 도착해서 계본(啓本)을 본격적으로 작성했다. 1882년 6월 5일 이규원은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에서 다시 고종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 후 고종은 이규원의 울릉도감찰사 활동 등을 인정하여 1882년 7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승진시켰다.



안용복의 활동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왕래가 금지되었는데도,

일본인들의 잦은 울릉도 불법 점거와
별목을 해결하기 위해 고종은 울릉도 감찰사로
이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울릉도 날씨, 지형, 만난 사람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검찰일기



『울릉도감찰일기』(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울릉도감찰일기는 크게 일기부분과 계초본으로 나뉘며 일기에는 매일의 날씨, 특별한 기후현상, 서울에서 평해까지 또는 평해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노정에 대한 도로현황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행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를 검찰하면서 기록한 일기에서도 매일의 날씨, 지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울릉도에서 만난 사람과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 울릉도의 현황뿐만 아니라 본인이 행하고, 보고, 느낀 점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이규원 감찰사는 서울을 출발하기 전 고종과의 독대에서 약속대로 울릉도를 검찰한

후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지역과 포구로 발달시킬 수 있는 지역을 열거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지역으로 화구로이며 분지지형인 나리동을 선택하였으며, 이 지역을 1,000여 호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 하였다. 검찰일기에서는 울릉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십가지 식생도 열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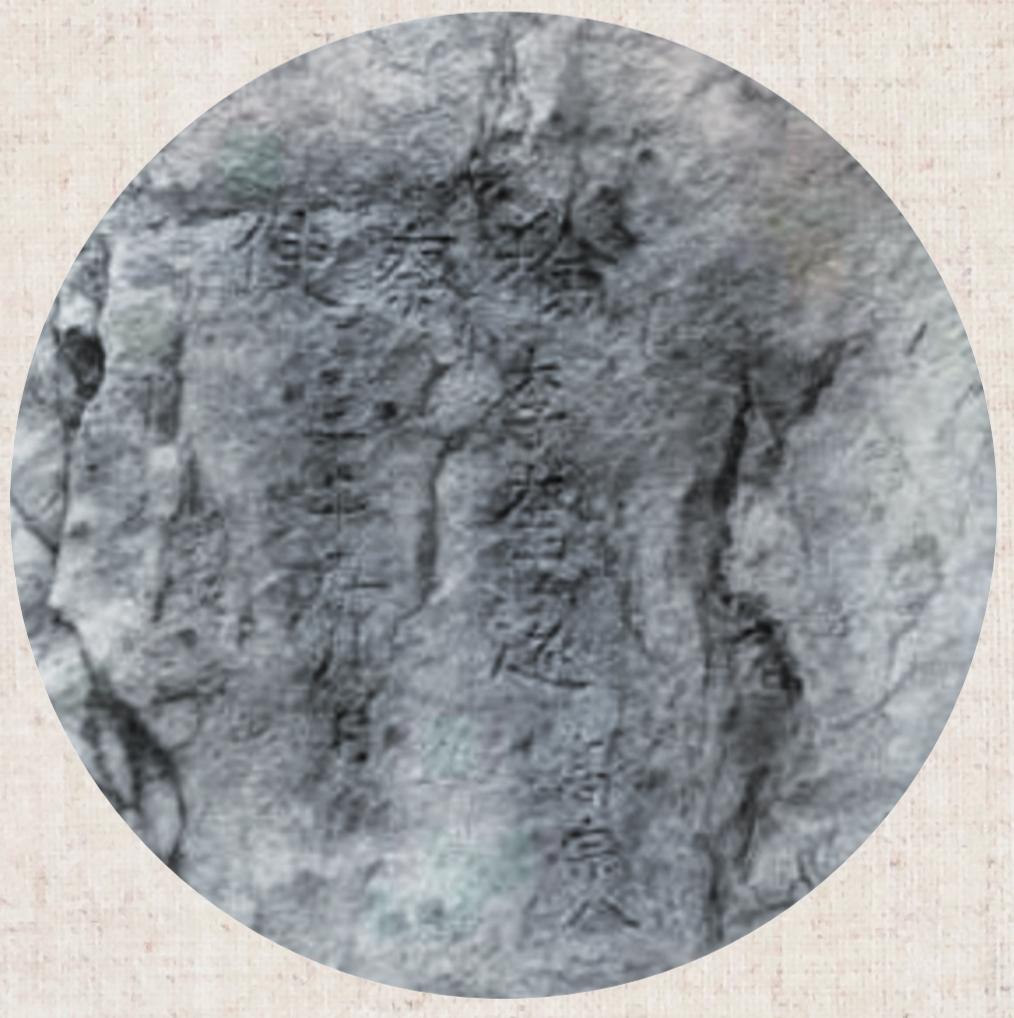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당시 울릉도에 머물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불법적으로 머물면서 벌목을 하고 있던 일본인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규원 감찰사가 울릉도를 검찰하면서 만났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130여 명이며 만나지 못한 사람까지 합하면 약 170~180명 정도가 된다. 이들은 대체로 배를 수선하기 위해 머물던 사람들, 해초나 해산물 채취를 위하여 머물던 사람들, 또는 약초를 캐기 위해 머물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고, 일부는 다년간 거주하였던 사람들도 있었다. 출신지역을 고찰하면 전라남도 흥양 초도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당시 78명의 일본인들은 '대일본국 송도 규곡'이라는 표목까지 세워놓고 불법으로 벌목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을 알고 있었으나 민간차원에서는 불법적인 벌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울릉도를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당시에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울릉도 전체를 그린 외도(外圖)와 나리분지 주변을 그린 내도(內圖)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울릉도 도항금지와 울릉도 정책에 영향을 끼친 검찰사 활동

이규원의 검찰사 활동은 이규원이 독도를 발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규원의 검찰사 활동은 대외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라는 일본정부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는 명령인 '유시(諭示)'를 이끌어 내었다. 1882년 12월 16일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에 관한 유시(諭示)를 작성했는데 그는 "울릉도에 대해 조선 정부와 의정(議定)한 연월을 삼입해서 종래부터 조선국에 속했으며 특별히 오늘날에 정한 것이 아님을 인증(引證)하고, 울릉도의 위치를 명시하여 도항을 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883년 3월 1일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이노우에의 상신한 문서를 승인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이후 조선 정부는 본격적인 울릉도 이주정책을 실행했다. 또한 조선정부는 조약에 기초하여 울릉도를 불통상(不通商) 항구로 판단했는데 일본인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벌금'으로 처벌할 것도 지시했다. 고종은 이규원의 검찰 보고서와 면담을 통해서 이규원의 단계적 울릉도 이주를 받아들였고 실행했다. 울릉도 불법 벌목 일본인의 추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울릉도 관련 행정제도 신설, 울릉도 이주를 위한 백성 모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조선은 울릉도 이주정책을 실행하면서 울릉도의 행정관할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즉 검찰사의 검찰활동을 계기로 울릉도에 개척령이 내리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살게 되면서 오늘의 울릉도가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이규원의 검찰일기는 1882년의 울릉도를 찾아볼 수 있는 유일의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일기라 평가된다.



이규원이 울릉도에 새긴 문화재자료 제412호 임오명각석문(출처: 디지털울릉문화대전)

이규원의 검찰보고로 울릉도 관리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출처: 행정박물관)

